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

2014. 6.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재허가 계획	1
① 개요 및 대상 사업자	1
② 재허가 신청서 접수	1
③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	2
④ 추진계획 및 일정	3
⑤ 유의사항	3
II. 재허가 심사	4
① 심사방향	4
② 심사절차	4
③ 심사기준 등	6
III.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7
① 신청서류 및 제출부수	7
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8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0
■ 첨부 : 신청서류 작성양식	

I. 재허가 계획

① 개요 및 대상사업자

가.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전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6개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전파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재허가 심사 실시

나.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허가만료일	신청기한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14.12.31.	'14.6.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안광한	'14.12.31.		
(주)에스비에스	이웅모	'14.12.31.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14.12.31.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14.12.31.		
유원미디어(주)	주상균	'14.12.31.		

② 재허가 신청서 접수

가. 제출서류(세부내역 'III.' 참조)

- 신청공문 1부
- 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 1부(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허가증 사본 1부
- 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방송보조국은 제외)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0호서식)
- 시설설치계획서 1부
- 기타 첨부서류

- 나.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 방송팀)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
☎ 02 - 2110 - 1451~2

③ 재허가 기준 및 허가증 교부

가. 재허가 기준

- 심사결과,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음
- '재허가'가 결정된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3~5년 이내에서 차등 부여 할 수 있음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의2. 방송국 : 5년

- ④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허가증 교부

- 재허가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재허가 거부사유 등 그 결과를 통보함

④ 추진계획 및 일정

일정	주요 내용
'14.6월	재허가 신청서 접수
'14.7월 ~9월	신청서 검토, 기술심사(미래부), 시청자 의견접수(4주) 및 현장점검
'14.10월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 의결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⑤ 유의사항

- 가. 재허가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특히 향후 사업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여 작성할 것
- 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다.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라. 제출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음

II. 재허가 심사

[1] 심사방향

- 재허가 기간('12.1 ~ '14.12)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시청자 의견청취(관보·홈페이지),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대표자·최대주주 대상 의견청취 실시

[2] 심사절차

가.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나. 재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처리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신청서류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 제출서류 징구 및 보완사항 통보

- 현장점검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다. 재허가 심사

- 방송사업 심사

-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의견청취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출자자(또는 대리인)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방송국 기술심사

- 방송국 허가 · 검사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전담반 구성을 통해 무선국의 개설조건 및 기술기준, 방송국 운용능력 적합 여부 심사(미래부)

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

○ 심사위원회의 방송사업 심사 결과와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마.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허가증 교부 또는 재허가 거부 통보, 심사결과 공표

③ 심사기준 등

가. 방송사업 관련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 점	방송법 관련조항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80점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70점	제10조제1항
4.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60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제10조제1항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0점	제10조제1항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40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8. 시청자의 권익 보호	70점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0점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감점처리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나. 방송국 기술심사 사항

- 전파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방송국 재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전파법 제21조) 및 무선국의 개설조건(전파법시행령 제27조) 충족 여부 심사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첨부도면에 따른 재허가 신청재원과 기존 허가사항의 변동여부 및 적정여부 심사

III.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및 제출부수

가. 방송사업 심사관련 서류

1) 신청서류 구성

- ① 신청공문
- ②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③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④ 서약서
- ⑤ 일반현황
- ⑥ 지상파DMB 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 ⑦ 주간기본편성표
- ⑧ 첨부서류 (※ 나. 기술심사 첨부 자료 등과 함께 별도제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허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대표자 변경시 재 제출)
 -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각 2부

2) 제출부수

구분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4	2	신청서 5부 + CD 2개 제출
보정 후 재접수시	원본 보정	14	2	신청서 14부 + CD 2개 제출

주¹⁾) ⑪첨부서류를 포함한 기타 부속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제출

주²⁾) 방송국 허가증 등 한글 파일로 변환이 어려운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나. 방송국 기술심사 관련 서류

1) 신청서류

- ①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②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전파법시행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③ 시설설치계획서 1부
- ④ 공사설계서 첨부자료 각 1부 (※ 가. 방송사업 심사 관련 첨부 자료 등과 함께 별도제본)
 -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지도
 -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공중선계 구성약도
 -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가.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알기쉽게 기술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재허가 신청서의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하고, 양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나.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반드시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양면 인쇄 가능)
- 다. 지도 ·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라.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 임을 표시하고, 표지 한쪽 면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곁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입함
 - 마.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출
 - 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기타 적의 산정하여 적용한 때에는 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물가 : 2014년 작성일 현재가격
 - 환율 : 재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 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 은행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 감가상각 :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 적용
 - 제세공과금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적용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①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 ▶ 재허가신청서는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1.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재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항목에 해당내용을 기재

2. 허가사항

- 방송국의 명칭, 허가번호, 최초허가연월일, 방송구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항목은 해당사항을 기재
- 방송사항(사업종류), 기타 허가의 주요내용 항목은 “방송국 허가증 사본 참조”라고 기재

3.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OO쪽」으로 기재 후 운영실적서 해당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

※ 별첨 자료를 재허가 서류가 아닌 별도 제본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는 「별첨-첨부서류 OO쪽」으로 표기

4.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OO쪽」으로 기재 후 운영실적서 해당항목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

5. 재허가 신청일

- 신청일은 재허가 신청 공문날짜와 동일하게 표기

② 방송국 허가증 사본

- 재허가 신청 대상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 첨부

③ 서약서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날인

④ 일반 현황

1. 개요

- 방송사업자(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조직도

- 해당 법인의 조직도를 첨부

※ DMB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DMB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음영 표기하고, 관련 부서가 DMB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

5. 법인현황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며, 주주현황은 5%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중심으로 기재하되, 그 외의 주주는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⑤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

- 1)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 2)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

※ 직접사용채널(TV, 라디오)에 한정하여 작성

나. 재난방송 편성 실적 및 계획

- 연도별 재난방송 실시 건수 및 편성 계획을 기술

※ 직접사용채널(TV, 라디오)에 한정하여 작성

다.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

- 재허가 시 제출한 공적책임 실현계획,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방안,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안에 관한 내용, 자체심의기구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 방송의 기본이념 및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체심의기구 운영 계획을 포함할 것)

마. 방송법령,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방송법, 전파법 위반사항 중 과태료, 과징금 처분 내역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사항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등
- 방송법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고시, 기준 등)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 기타 법령(공정거래 및 조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 및 처분 내역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가. 채널구성 계획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1) 채널 구성 관련 현황

- ① 채널 구성의 기본 방향, ② 채널 운용 내역, ③ 채널 임대 조건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2) 향후 5년간 채널 구성 · 운용 계획

- 채널 구성 · 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
- 임대채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대조건과 채널임대에 있어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

나.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1) 분야별 방송비율

- 직접사용채널의 연도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편성 비율을 작성

2) 프로그램 제작 주체별 방송 현황

- 직접사용채널의 제작 주체별 방송현황을 연도별로 작성

3) 프로그램 제작 관련 투자 실적

- 직접사용채널의 제작 관련 투자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 직접 사용채널의 DMB용 방송프로그램 신규제작·구매현황 및 편성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다. 향후 5년간 편성계획

- 방송편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채널별로 방송분야별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계획,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직접사용채널의 DMB용 방송 프로그램을 신규제작·구매계획 및 편성 계획을 연도별로 작성

3.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가. 지역사회발전 기여현황 및 공익사업 등 참여실적

-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작성

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향후계획

- 향후 5년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을 기술

다. 시청자 의견 청취 관련(재허가를 위한 시청자 의견 청취 시)

- 방통위가 재허가 신청서 접수 후 해당 방송사에 재허가를 위한 시청자 의견 청취 관련 안내 및 고지 요청시 이행 내역을 기술

4. 경영의 적정성 ※ 실적 및 계획을 알기 쉽도록 작성

가. 사업운영의 기본방향

-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상세하게 기술

나.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각각 구분 작성)

- 경영의 효율성(부문 통합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술
- 경영의 투명성(사외이사 등)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을 기술

다.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 1) 직급별 인력 구성 현황
- 2)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현황

라.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DMB 관련 인력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1)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2) 인력 운용계획
-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마.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

- o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실적 및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작성

바.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 o 향후 5년간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

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

- o 연구 개발 투자실적 및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작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가. 재무구조

- o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2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을 작성
- o 매출액은 매출액 총액 기입 후 방송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매출액을 구분하여 작성
- o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연말+연초)÷2}×100
- o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연말+연초)÷2}×100

나. 수입현황

- 수입 유형별로 작성

다. 주주 관련

- 1) 주주현황(작성일 기준)
- 2) 주주 변동내역
-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라. 추정 재무제표

- 2014년 및 향후 5년간(15년~19년)의 추정 재무상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작성

마. 추정수입

- 수입 유형별로 작성

바. 난시청(음영지역) 해소 실적 및 계획

- 난시청(음영지역) 지역 해소계획을 작성

※ 사업자별 방송구역 난시청지역 현황을 확인 후 명시(그림 또는 한글)

사. 방송시설에 대한 구축·투자 실적 및 계획

- 1) 방송시설에 대한 구축·투자 실적 및 세부내역
- 2)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세부내역

※ 방송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DMB에 관한 사항을 별도 기술

- 3)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및 계획

-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적 및 계획을 작성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 1)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2)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3)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 4) 기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나. 방송발전을 위한 향후 지원계획

7. 시청자의 권리보호

가. 시청자 권리보호 관련 이행실적(DMB에 한정하여 작성)

- 1)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 2)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 3)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3대 사유)
- 4)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3대 사유)

나. 시청자 참여보장 방안

- 1) 시청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시행 내역
- 2) 향후 5년간 시청자 참여기회 보장 방안

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1)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 2)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활용 내역(DMB에 한정하여 작성)
- 3)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 (DMB에 한정하여 작성)
- 4) 시청자위원회 위원명단
- 5) 향후 5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8. 재허가시 부과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약조건 이행 현황

가. 재허가 조건 및 부관사항 이행 현황

- 각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및 부관사항 이행현황, 미이행시 사유 등을 기재

나.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사업자 이행현황

- 각 사업자별 이행각서(이행약정서) 제출내용과 이행결과, 미이행시 미이행 사유 등을 기재

9.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 방송관련 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시정명령 처분 및 이행 여부

[6] 주간 기본편성표

- 전체 운용채널(TV, 라디오, 데이터방송) 주간 기본편성표 제출

※ 2014년 신청일 기준, A4 용지 규격. 끝.